

「하이예크」의 自發的 社會秩序에 관한 一考察

朴 祥 洙*

目 次

I. 序 論
II. 自發的 社會秩序의 意味
III. 行動規律과 社會秩序
IV. 人爲的 秩序와 自發的 秩序의 關係
1. 明文化된 規律과 自發的 社會秩序
2. 組織과 自發的 社會秩序
3. 組織의 規律과 自發的 社會秩序의 規律
V. 規律의 進化와 自發的 社會秩序의 發展
1. 規律의 進化와 自發的 社會秩序의 關係
2. 文化의 進化와 自發的 社會秩序
3. 社會主義와 進化의 逆行
VI. 自發的 社會秩序理論에 대한 評價
1. 「다윈」의 進化理論과의 差異點
2. 自發的 秩序와 個人的 自由
3. 自發的 秩序와 分配的 正義
VII. 結 論

I. 序 論

‘自發的 秩序’에 관한 「하이예크」(Friedrich A. Hayek)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이 無知하다는 認識論的인 思想이고, 둘째는 社會制度進化論이며, 그리고 셋째는 自由主義 思想이다. 그는 ‘인간이 法, 道德律과 같은 社會제도 또는 文化를 창조하였고 또한

* 經尚大學 經濟學科

그런 제도 또는 문화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構成主義'인데, 그 구성주의는 人間의 理性을 너무 과신한다.

사실 사회제도, 자연환경 및 다른 인간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단편적이다. 따라서 인간은 無知하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사회제도의 임의적인 개혁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파국을 유발한다. 그 결과 「하이예크」는, 人間의 經驗的 知識의 蓄積 結果인, 사회제도를 임의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사회제도는 개혁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意圖的인 人間行動들이 상호조정됨에 따라 사회제도 자체가 스스로 변모하여 간다. 그러나 사회제도 진화의 결과, 自由主義 社會가 반드시 실현된다고 볼 수 없다. 「하이예크」는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自由主義 社會의 實現을 위한 間接的인 與件의 造成을 증시한다. 특히 정부의 直接的인 干渉이 아니라, 주로 禁止의 規律 등과 같은 法的 規律하에서 사회가 움직이고 변화하도록 방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자유주의는 自由放任主義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적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조력하는 政府의 間接的인 干渉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하이예크」의 자발적 사회질서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그 이론이 「다윈」의 진화이론과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자발적 사회질서가 개인적 자유 및 분배적 정의와는 어떤 관련을 갖는가를 살펴본다.

II. 自發的 社會秩序의 意味

「하이예크」는 社會現象에 관한 고대 그리스 및 詭辯哲學의 遺産인 二元論, 즉 自然的 現象 (physei)과 人爲的 現象 (nomo) 간의 구분에 반대한다. 여기에서 '自然的'이란 용어에는 無計劃的, 不規則的, 非構造的 및 野性的인 意味가 내포되어 있으며, 반면에 '人爲的'이란 용어에는 意圖的, 構造的, 規則的 및 計劃的인 意味가 내포되어 있다.¹⁾ 만약 이런 구분을 따른다면, '人間行動 (human action)'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對象과 '人間行動'의 結果인 對象간의 구분에 관한 問題, 그리고 '人間의 設計 (human design)'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對象과 '人間의 設計'의 結果로써 발생하는 對象간의 구분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²⁾ 이런 두가지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면 커다란 오류가 발생한다. 즉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인간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현상은 인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면에 그 현상이 명백히 인간의 설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자연적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1) Butler, E. (1983), *Hayek: His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Our Time*, p.16.

2) Hayek, F.A. (1973),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1 *Rules and Order*, p.20.

따라서 사회제도를 묘사하는 제3의 범주가 필요하다. 이런 사회제도는 근원상 人間行動의 結果이지만, 本能的이지도 않고 또한 人間의 意識의 努力 또는 意圖的인 構築의 結果도 아닌, 自發的인 社會秩序이다. 이런 현상은 18세기 「맨더빌」(B.Mandeville)과 「흄」(D.Hume)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피거슨」(A.Ferguson)에 의하여 '人間設計의 結果가 아닌 人間行動의 結果'(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로 묘사되었다.³⁾ 이런 사회질서는 개개인의 行動規律의 自然選擇과 社會制度와의 相互調整을 통하여 사회내에서 進化되고 自己規制되는 構造를 갖는다.

「하이예크」가 제시한 自發的 秩序의 대표적인 사례는 文法에 관한 사례이다.⁴⁾ 人間의 言語는 매우 複合的인 文法的 構造를 가지고, 낱말은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되며, 그리고 상이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낱말과 구절의 의미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비록 언어가 명백히 규칙성을 갖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명백한 이득을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언어가 합리적인 주제에 의하여 창조되고 의도적으로 개혁되어 왔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긍정하지 않는다. 단지 언어가 유용하기 때문에, 언어는 단순히 진보되어 왔고 또한 아직도 존재할 뿐이다.⁵⁾

「하이예크」가 自發的 社會秩序를 강조하는 이유는 데카르트적 合理主義와 그에 근원한 構成主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내에서 발견되는 질서가 意識的인 '合理的 理性'에 의하여 구성되고 또한 통제될 수 있다는 견해에 반대한다. 우리의 '意識的인 自我'는 우리의 心理的 秩序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며, 또한 社會秩序를 결정하는 각 구성원에 대한 知識, 個人간의 相互作用에 관한 知識 및 外部 環境에 관한 知識 등도 불완전하다. 따라서 '意識的인 自我'에 근원한 '合理的 理性'은 사회질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는 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특히 문제되는 사항은 意識的 理性에 의하여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인 견해가 자발적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나아가서는 자유주의를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회주의로 귀결한다는 점이다.

Ⅲ. 行動規律과 社會秩序

개인의 抽象的 規律 즉 行動規律은 두뇌와 같은 中樞神經系統에 의하여 통제되는 규율이며, 이런 규율은 意識的인 心理狀態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런 意識的인 心理狀態와 無意識的인 心理狀態에 의하여 창조되는 규율이다. 따라서 개인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3) *Ibid.*, pp.20~1.

4) *Ibid.*, p.19 및 Hayek, F.A.(1962), 'Rules, Perception and Intelligibility,'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Reprinted in Hayek, F.A., ed.(1967),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Routledge & Kegan Paul, p.43.

5) Butler, E.(1983), *op. cit.*, pp.16~7.

로 이런 행동규율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에는 그 개인이 어떤 설정된 명령에 추종하거나 또는 그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의식한다는 의미는 없다. 단지 그 개인은 어떤 '發見可能한 原理'를 추종할 뿐이다.⁶⁾

반면에 自發的 社會秩序는 무수한 많은 구성원들의 行動規律의 相互調整에 의하여 형성되는 질서이며, 특히 이런 질서는 각 구성원의 意識的인 意圖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사회질서가 진화되고 또한 존속하는 것은, 개개인 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共同目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이예크」의 주장을 인용하면, '그런〔自發的 社會〕秩序는 外部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으므로 비록 그런 질서의 존재가 그런 질서내에서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질서는 아무런 目的도 가질 수 없다.'⁷⁾ 즉 개인의 행동은 目的追求的이면서 規律追從的이기 때문에, 개인은 目的論的 存在(teleological being)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목적은 상이하고, 이런 목적의 상호조정에서 사회질서가 출현하며, 그리고 이런 사회질서는 개인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그렇지만 社會秩序 자체는 個個人의 共通的인 目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傷害, 竊盜, 約束破棄 등과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制限的 또는 禁止的 規律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런 금지적 규율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호협력과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며 또한 개인에게 자유로운 행동의 범위를 확대시킨다.⁸⁾ 즉 규율은 어떤 유형의 행동들을 금지시키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행동의 가능한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개인의 행동규율은 法, 道德律, 其他 社會制度 등과 같은 (사회적) 규율에 적용하며, 그리고 개개인은 이런 규율과 자신의 행동규율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 결과 規則性을 보여주는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더욱이 사회질서를 형성시키는 개인의 行動規律의 全體體系는 協同의 利益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또한 그런 規律體系를 추종하는 집단을 번영시킨다. 만약 어느 한 규율 또는 소수의 규율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지 모른다.

그러면 個別 行動이 어떤 규칙성을 보여준다면, 자발적 질서가 형성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내에서 완전히 규칙적인 약간의 행동은 단지 無秩序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만약 어떤 개인이 만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려고만 하는 것이 규율이라면 또는 다른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 규율이라면, 그 결과는……명백히 질서의 완전한 불가능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가능케하는 방식으로 개인들이 행동하게끔 유도하는 규율이 選擇的 進化的 過程에 의해서 進歩될 경우에만,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⁹⁾ 즉 개별행동의 규칙성은 반드시

6) *Ibid.*, p.18.

7) Hayek, F.A. (1973), *op. cit.*, p.39.

8) Hayek, F.A. (1970), 'The Errors of Constructivism,' an inaugural lecture delivered on 27 January. Reprinted in Hayek, F.A., ed.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8.

9) Hayek, F.A. (1973), *op. cit.*, p.44.

시 자발적 질서를 낳지 않으며, 단지 개인의 행동규율이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경우에만 그때의 규율은 자발적 질서를 형성가능케 한다. 이것은 개인들이 한정된 규율을 추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의 행동도 어떤 범위내로 한정된다. 그러나 모든 개별 행동들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주어진 환경하에서 그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식은 상이하며, 따라서 상이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질서가 형성되려면, 동일한 행동이 아닌, 질서를 가능케하는 행동간의 類似性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IV. 人爲的 秩序와 自發的 秩序의 關係

사회질서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人爲的 秩序와 人間의 意圖와는 독립적으로 성장한 自發的 秩序 등 두가지로 나뉜다. 人爲的 秩序는 고대 그리스어로 taxis이며, 의도적인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질서로서 통상 조직으로 묘사된다. 아마 대표적인 조직은 정부일 것이다. 반면에 自發的 秩序는 고대 그리스어로 kosmos(cosmos)이며, 의도적인 설계와는 독립적으로 成長한 秩序로서 수많은 人間行動의 產物이다.¹⁰⁾

1. 明文化된 規律과 自發的 社會秩序

「하이에크」는 규율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¹¹⁾ 특히 그는 인간의 행동을 인도하는 規律이 일반적으로 상세히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道德의 規律과 慣習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動物의 社會와 유사하였던 原始時代에는 사회생활의 구조가 구성원들이 스스로 준수하는 행동규율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고 또한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런 행동규율들이 명문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法의 規律들이다. 이런 명문화된 규율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개개인의 지식이 상당한 정도까지 상이하기 시작할 때이다. 규율들을 명문화

10) *Ibid.*, pp. 36~8.

11) Hayek, F.A. (1970), *op. cit.*, pp. 8~9: '① 단순히 사실로서 관찰되지만, 결코 언어로 언급되지 않는 규율들; 만약 우리가 '正義의 느낌' 또는 '語感'에 관하여 언급한다면, 우리는 용용가능하지 만 명백히 알지 못하는 그런 규율들을 지칭한다; ② 비록 규율들이 언급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오래전에 행동으로 관찰된 것을 아직도 단순히 개략적으로 표현하는 규율들; 그리고 ③ 의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리고 그 결과 문장으로 설정된 단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규율들.' 즉 규율은 언어로 언급하기 곤란한 규율, 언어로 언급됐지만 불완전하게 표현한 규율 및 의도적으로 명시한 규율 등 세가지인데, 「하이에크」는 첫째와 둘째의 규율을 증시한다. 규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行動規律' 또는 '抽象的 規律의 體系'와 사회 전체 또는 집단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社會秩序'로 구분된다.

된 형태로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규율들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며, 그리고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적절한 행동에 대한 견해차이가 규율들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¹²⁾

慣習이나 道德律이 인간행동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난 규율이라면, 法의 規律들은 意圖的인 設計의 産物이다. 그러나 비록 법의 규율들이 立法者의 意圖의 産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인위적인 규율에 의존하는 질서는 인위적인 질서가 아니고 자발적인 질서이다. 왜냐하면 법의 규율들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은, 입법자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는, 여러가지 환경에 항상 의존하기 때문이다.¹³⁾

그런데 명문화된 규율들은 인간의 경험축적에 의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또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 결과 질서는 意圖的으로 設計된 規律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질서는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유발한다. 그 이유는 입법자의 지식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런 규율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개개인의 지식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고 또한 그런 지식의 統合에 의하여 자발적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2. 組織과 自發的 社會秩序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組織이 효율적인 協助의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 그런데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자발적 질서와 人爲的 組織이 공존한다. 사회는 政府, 企業, 勞動組合과 같은 조직 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들로 구성되며, 그리고 개개인은 여러 조직에 중복적으로 속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예컨대 遊牧民, 氏族 등과 같이 小規模 集團인 사회에서는, 指導者의 命令 없이도 통상적인 규율이 일상적으로 준수됨으로써 그런 사회는 자발적 질서로 운영되며, 반면에 사냥, 집단이주 또는 전투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일한 사회가 지도자의 통제적 의지하에서 조직으로 운영된다.¹⁴⁾

사회가 커지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사회도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고, 개개인은 중복적인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개개인은 필요에 따라 조직의 지휘하에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과거의 경험축적에 의존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식에 입각해서 행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는 사회질서의 부분집합일 뿐이다. 특히 자유로운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는 조직은 '政府'라는 조직일 것이다. 政府는 최소한도의 규율의 준

12) Hayek, F.A. (1973), *op. cit.*, p.43.

13) *Ibid.*, p.46.

14) *Ibid.*, p.47.

수를 보장시키는 불가결한 조직이다. 그런데 정부의 기능은 크게 強制的 機能과 서비스 機能의 두가지로 나뉜다. 서비스기능은 企業, 家計 등의 기능과 같이 정부내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을 配分·管理하는 기능을 말하며, 반면에 強制的 機能은 全般的인 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核心的 條件을 제공한다.¹⁵⁾

예컨대 기업, 노동조합, 가계 등과 같은 집단은 그들 나름대로의 目標를 갖고 운영되지만, 그러나 정부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정부도 전반적 질서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데, 정부는 특히 그런 질서가 規則性을 갖도록, 그리고 無秩序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의 규율을 제정하고, 홍보하며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다. 이런 현상은 사회가 多元化되고 複雜化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發的 秩序가 特定한 方向으로 나아가도록 肯定的 側面의 目標를 설정하여선 곤란하다.

3. 組織의 規律과 自發的 社會秩序의 規律

모든 각각의 조직은 詳細한 命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규율에도 의존하여야 한다. 모든 각각의 조직은 命令에 의해서 각 구성원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 성취하여야 할 목표 및 채택하여야 할 방법의 일반적인 성격들만을 결정하고, 반면에 개개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詳細한 內容들은 개개인의 知識과 熟練 등에 위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組織의 組織者가 당면하는 問題는, 組織者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자식들을 조직의 구성원 각자가 활용하도록, 각 구성원이 서로 협조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組織에 적용되는 규율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조직내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규율은 개인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율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준수하는 규율은 명령에 의해서 配置받은 位置와 特定한 目標에 의존한다. 그 결과 組織의 規律은 개인행동의 詳細한 內容(즉 命令에 의해서는 規制가 불가능한 내용)을 규제할 뿐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조직의 규율은 명령에 補助的인 役割을 하며, 더욱이 조직의 규율은 相異한 構成員에 대하여 相異한 規律이 적용된다는 특성을 갖는다.¹⁶⁾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조직이 목적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조직의 目的追求를 위해서 구성원 각자에게 相異한 任務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발적 질서를 규제하는 규율은 目的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사회의 전체 구성원에게 적어도 '無差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규율은 구성원 각자의 知識과 目的의 관점에서 個別的으로 적용되며 그리고 사회의 共同目標와는 독립적이며, 그런 共同目標를 개개인이

15) *Ibid.*, p.47~8.

16) *Ibid.*, pp.49~50.

알 필요도 없다. 예컨대 자발적 질서가 의존하는 법의 一般的 規律들은 抽象的 秩序를 目標로 하며, 그런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며 또한 豫見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법의 일반적 규율들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명령 그리고 조직을 규제하는 규율은 組織者가 목표하는 특별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봉사하고, 그리고 조직의 규율은 그런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을 상이하게 다룬다. 그러나 자발적 질서에서 적용되는 규율은 共同目標와는 독립적이므로, 전체 구성원을 동등하게 다룬다.¹⁷⁾

사회가 복잡하여짐에 따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指導者의 知識은 더욱 더 제한적이 된다. 따라서 자발적 질서를 조직으로 대체함으로써 分散된 知識을 활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命命에 補助的인 規律를 추가하고 또한 그런 규율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¹⁸⁾ 왜냐하면 명령에만 의존하여선 조직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에서 補助的인 規律의 役割은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이런 규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組織의 效率性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발적 질서를 결정하는 규율에 補助的인 命命을 부가한다는 것, 즉 자발적 질서에 간섭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分散된 知識의 統合과 活用을 억제함으로써, 自發的 秩序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V. 規律의 進化와 自發的 社會秩序의 發展

1. 規律의 進化와 自發的 社會秩序의 關係

개인의 행동규율은 生得規律과 學習規律로 나뉜다.¹⁹⁾ 生得規律은 本能的인 성격을 가지고, 遺傳學的으로 轉移되는 규율이며, 그리고 다소 경직적인 측면을 가진다. 반면에 學習規律은 덜 엄격하게 준수되며,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하여금 그런 규율을 준수하게 하려면 계속적인 외부압력이 필요하다. 특히 學習規律은 生得規律에 비하여 보다 더 탄력적인 성격을 갖는데, 개개인은, 추상적인 규율을 준수하는 방법을 모방함으로써, 그런 규율을 배운다.

개인의 행동규율은 항상 변화하며, 選擇的으로 진화한다. 그런데 '規律의 自然選擇은 集團의

17) *Ibid.*, p.50.

18) *Ibid.*, p.51.

19) Hayek, F.A.(1967), 'Notes on the Evolution of Systems of Rules of Conduct: The Interplay between Rules of Individual Conduct and the Social Order of Actions', in Hayek, F.A., ed.(1967),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Routledge & Kegan Paul, p.78.

結果的 秩序의 效率性 위에서 이루어진다.²⁰⁾ 즉 사회질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또는 사회적 규칙성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행동규율이 선택적으로 진화한다. 특히 사회질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사회의 규칙성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규율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서서히 淘汰된다. 그런 自然選擇의 過程에서는 生得規律 또는 本能的 規律은 억제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學習規律은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회질서는 개개인이 그 사회에서 전개하고 또한 발전시켰던 행동의 규칙성의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질서는 행동규율의 자연선택적인 진화의 결합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개개인은 특수한 구조를 가지며 또한 특수한 행동을 하는가? 그런 특수한 구조와 특수한 행동을 갖는 개인의 존재는 역시 특수한 구조를 갖는 사회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사회내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특수한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²¹⁾ 만약 그 개인이 그런 특수한 구조를 갖지 않고, 사회내에서 적용할 수 없는 다른 특수한 구조를 갖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개인은 그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 즉 개개인은 그 사회에서 적용하기에 알맞도록 자신의 구조와 행동을 조정한다.

따라서 개인행동의 결과로 사회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原因이 개인의 행동이고 결과는 사회질서이다. 반면에 사회질서의 존재로 인하여 개인은 또한 특수한 행동규율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逆의 인과관계도 성립한다.²²⁾ 결과적으로 개개인과 사회질서는 상호 의존적이며, 따라서 사회질서는 개별 행동요소로 완전하게 還元될 수 없다.

2. 文化의 進化와 自發的 社會秩序

‘문화는 自然的이지도 人爲의이지도 않으며, 또한 遺傳學的으로 轉移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合理的으로 設計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결코 발명되지도 않은, 행동에 관한 學習規律의 傳統이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개개인은 통상 그 傳統의 機能을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문화는 生得的인 動物的 本能을 ‘非合理的인 慣習’에 복종시킴으로써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런 비합리적인 관습은, 점진적으로 규모가 커져가는, 집단을 규칙성있게 만드는데 기여한다.²³⁾

‘文化的 進化’의 과정에서 文化와 理性은 동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이성이 문화를 일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으며 또한 문화가 이성을 일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는다. 人類의 歷史에서 文化는 발전하여 왔는데, 이런 문화의 발전과정은 本能的 價値를 억제하는 規律體系의 進化過程이

20) *Ibid.*, p.67.

21) *Ibid.*, pp.76~7.

22) *Ibid.*, p.77.

23) Hayek, F.A.(1979),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p.155.

며, 그리고 이런 규율체제는 각 단계에서 傳統的 價値를 갖는다.²⁴⁾ 이런 전통적 가치²⁵⁾는 인간의 삶에 대한 知慧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理性에 의하여 전통적 가치를 판단하고 폐기한다는 것은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전통적 가치가 非合理的인 慣習에 기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전통적인 가치는 사회를 질서있게 유지시키는데 공헌한다. 따라서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전통적 가치를 폐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道德的 價値에는 개인의 지식보다도 더욱 더 많은 지혜가 내포되어 있으며, 반면에 매우 제약적인 지식으로는 몇 백, 몇 천년에 걸쳐서 형성되고 진화되어온 가치체계 또는 규율의 체계를 완전히 평가할 수 없다.

변화하면서 진화하여온 도덕적 가치체계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종종 내부적으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도덕적 가치체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精製시켜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몇몇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데 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가치체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바로 이때 理性의 役割이 중요하다. 이성(理性)은 도덕적 가치간의 상호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조력하며, 모순되는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가치를 폐기하는데 기여한다. 그렇지만, 이성(理性)은 도덕적 가치를 새로이 창조할 수는 없다.²⁶⁾

무한히 많은 구성원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사회를 유지시키는 도덕적 가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信號로서만 봉사한다. 즉각적인 개인의 욕구충족 또는 인식가능한 목표의 추구 대신에, 學習規律의 遵守는, 복합적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自然的 本能을 억제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사회의 점진적인 巨大化와 多元化 속에서 文化의 進化는 바로 이런 本能的 規律 또는 生得規律의 抑制의 過程이었다. 이런 生得規律의 抑制 및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規律의 出現은 대단위 집단의 행동의 상호조정을 가능케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적 진화는 生得規律의 抑制, 學習規律의 形成 및 規律의 自然選擇의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24) Hayek, F.A. (1970), *op. cit.*, pp.18~20.

25) 「하이에크」는 價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가치는, 특정한 순간에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목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인간의 대부분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인도한다. 더군다나 이런 관점에서의 가치는 대부분 문화적으로 이전되며 그리고 가치를 의식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의 행동 조차도 인도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意識的인 注意의 焦點이 되는 目標은 특정한 시점에서 인간이 스스로 발견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結果이다.」 Hayek, F.A. (1967), 'The Confusion of Language in Political Thought,' a lecture delivered in German, Reprinted in Hayek, F.A., ed.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87. 즉 目標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行動方針이며, 반면에 價値는 모든 시점,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行動指針이다.

26) Hayek, F.A. (1970), *op. cit.*, p.20.

27) Hayek, F.A. (1979), *op. cit.*, pp.160~1.

3. 社會主義와 進化的 逆行

소위 사회는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사회의 생산물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거나 또는 私有財産制度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社會主義는 種族倫理學으로의 復歸를 의미한다. 「하이예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社會主義는 단순히 種族倫理學의 再闡明이지만, 그러나 그런 種族倫理學의 漸進的인 緩和만이 偉大한 社會(Great Society : 複合的이고 多元的인 社會)로의 接近을 가능케 한다.'²⁸⁾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히 알고 있는 사회에서는 본능적인 규율이 증시되고 또한 한 사람에게 의하여 그 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상호조정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거의 잘 모르는 오늘날의 대규모 사회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種族的 本能에 의하여 규제될 수 없고, 본능을 억제하는 一般的 規律에 의해서만 규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는 意識的인 計劃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意識的인 計劃에 의하여 사회를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種族社會로의 復歸이며, 社會制度의 進化와는 역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自發的 社會秩序理論에 대한 評價

1. 「다윈」의 進化理論과의 差異點

自發的 秩序는 균형상태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變化하는 信念과 選好의 世界에서 社會的 變化의 한 過程이며, 社會制度에 관한 進化論的 性格을 갖는다. 그러나 '遺傳的인 偶然的 性質의 再生産의 適合性을 통해서 그런 偶然的인 性質을 自然選擇하는' 「다윈」(Darwin)적 進化理論과는 약간 상이하다.²⁹⁾

우선 「다윈」의 自然選擇說은 有機體의 個體에 적용되는 이론인 반면, 「하이예크」의 社會制度 進化理論은 특정집단의 社會制度·構造에 적용된다. 즉 집단의 實行慣行과 制度, 行動規律 등이 각 構成員의 生存機會에 영향을 줌으로써, 社會制度의 進化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제도 진화이론은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이론이므로, 개인의 抽象的 規律의 進化, 社會의 道德律과 法規律의 進化 및 그 相互作用을 고찰함으로써 社會制度의 進化가 논의될 수 있다.

28) Hayek, F.A. (197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pp.133~4.

29) Gray, J. (1984), *Hayek on Liberty*, pp.32~3.

둘째, 社會制度·構造에는 有機體와 같이 단순한 自己複製의 可能性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個人的 經驗의 知識이 變化하므로 집단의 각 구성원의 抽象的 規律도 과거와는 상이하게 변모하며, 그 결과 집단의 각 구성원도 과거의 구성원과는 질적으로 상이하여 지기 때문이며, 그리고 각 구성원의 변모된 抽象的 規律은 그에 부응하는 사회질서를 과거와는 상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社會制度·構造는 自己複製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의 추상적 규율과 사회제도의 재생산적 적합성을 提高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각 구성원의 생존기회를 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유지·변모된다.

특히 社會制度 進合理論에서는 生得規律의 選擇的 進化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로 學習規律의 選擇的 進化를 다루며, 그리고 이런 學習規律의 相互作用을 통한 社會制度의 選擇的 進化를 다룬다. 그런데 이 경우 進化的 法則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진화이론은 단순히 하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며, 그런 과정의 결과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무수한 특정한 사실들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런 진화이론은 미래에 대한 豫測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는 '原理에 관한 說明'에 한정하거나 또는 그 과정을 수반하는 抽象的 樣態에 대한 豫測에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必然的인 結果, 즉 進化的 結果 특정한 社會現象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必然性을 보여주는 法則은 사실상 유도할 수 없다.³⁰⁾

2. 自發的 秩序와 個人的 自由

自發的 秩序는 人間行動의 結果이지만, 그러나 意圖되지 않은 結果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自發的 秩序가 個人的 自由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자발적 질서가 반드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제도는 進化的 法則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출현한다고 볼 수 없다. 「하이예크」가 염두에 두는 사회 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개인적 자유가 최대로 허용되는 사회일 것이지만, 실제로 「하이예크」가 우려하는 사회주의 사회 내지는 全體主義 社會로 귀결될지 모른다. 물론 의식적으로 사회를 再設計하려는 試圖는, 예컨대 이란과 아프리카 몇몇 국가처럼, 意慾的인 近代化計劃의 後遺症인 混亂과 道德的 無秩序를 물고올 수 있다.³¹⁾

그러나 의식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政府干涉의 增大 또는 全體主義 國家의 出現은 가능하다. 소위 민주주의의 투표경쟁을 통한 利益集團의 활동은 주로 그들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

30) Hayek, F.A. (1976), *op. cit.*, pp.23~4. 특히 法則과 '原理에 관한 說明'에 관해선 본인의 학위논문 「Friedrich A. von Hayek의 經濟學方法論과 이에 따른 貨幣理論의 再構成」(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년 8월)을 참조하시오.

31) Gray, J. (1984), *op. cit.*, p.118.

하여 政府의 權力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政府의 干涉이 증대된다. 비록 그들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政府의 干涉政策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政府干涉은 축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에 반하여 다른 집단 또는 개인이 政府權力을 이용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집단은 그들 目標의 實現失敗에도 불구하고 政府權力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³²⁾

그러면 個人的 自由를 신장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발적 질서 대신에 意圖的인 設計에 의하여 즉 意圖的인 改革에 의하여 개인적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이예크」의 지론이다. 결국 자발적 질서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하이예크」는, 法的 規律하에서 개개인 각자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허용한다면, 一般的 厚生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즉 자발적 질서 그 자체는 개인적 자유를 함축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법의 규율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질서는 자유를 함축하며 나아가서는 그런 규율하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일반후생도 극대화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법의 규율은 절도, 살인 등을 금하는 禁止的 規律이며, 적극적으로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더군다나 법의 규율은 강제력을 함축하지만, 금지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最小한의 強制力을 갖는다.

「하이예크」의 자유는 消極的 自由의 概念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어디까지 강제력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경제학에서 여러가지 문제, 특히 시장에 대한 政府의 干涉의 範圍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3. 自發的 秩序와 分配的 正義

가. 正義의 意義

正義(justice)는 두가지의 상이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一般的 規律하에서 개개인의 行動이 公正한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자발적 질서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目的-獨立的 規律을 묘사하는 '公正한 行動의 規律'을 의미한다.³³⁾ 이런 '公正한 行動規律'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또는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함으로써,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살게끔 허용한다. 물론 그런 규율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그런 규율을 어길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의 正義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율이며, 또한 道德的 概念이다. 따라서 公正性의 問題는 특정한 個人的 行動이 公正한가 또는 不當한가의 문제이다.

둘째의 公正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사람들간의 物質的 分配이며, 社會的 正義 또는 分配的 正義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간의 富 또는

32) Hayek, F.A. (1944), *The Road to Serfdom*(鄭道永 譯, 「隷從에의 길」), pp.215~43.

33) Hayek, F.A. (1976). *op. cit.*, p.31.

所得의 특정한 分配가 다른 분배와 비교하여 더 공정하다 또는 덜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하이예크」가 정의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면 그것은 첫째의 개념이다. 어떤 개인이 일반적 규율하에서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공정하며, 반면에 일반적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은 불공정한 행동이 된다. 그러나 경제학자 또는 정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正義의 問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은 둘째 개념에 관한 언급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富 또는 所得의 相對의 地位는, 어떤 개인의 意圖的인 努力의 結果가 아닌,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過程의 產物이다. 따라서 그 產物은 결코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公正의 觀點에서 論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부연하면,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규율하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서가 형성된다. 그러나 規律를 준수할 경우의 전반적인 효과는 결코 시전에 알려지지 않는다. 소위 사회는 복합적 현상이며,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도 역시 복합적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복합적 사회를 특정한 개인 또는 지도자 또는 정부의 公正의 觀點에서 논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自發的 秩序와 分配의 正義

分配의 正義의 觀點에서 사회를 논의하고, 또한 租稅의 手段에 의하여 社會의 分配를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사회를 잘못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는 公正한 分配와 같은 共同目的을 결코 갖지 않는다. 사회는 單一目的을 갖는 個別 行動主體도 아니며, 또한 공동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어떤 合意도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는 상이한 목적을 갖는 개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목적들이 일반적 규율하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결과 전반적인 질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社會의 正義가 새로운 道德的 價値로 채택된다면, 개개인의 행동은 그런 道德的 價値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傳統的 價値, 기존의 道德도 희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傳統的 價値와 道德은 개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一般的 規律에 의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社會的 目的 즉 分配의 正義가 一般的 規律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더 적은 또는 더 많은 보수를 받는가? 市場過程은 한 개인의 서비스가 그의 同僚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로 評價되는가에 관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한다.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어떤 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의 숫자, 그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들의 숫자 및 구매자가 느끼는 欲求의 緊急性 등에 의존한다. 각각의 서비스의 보수는, 그 서비스에 부여하는 個人的 또는 主觀的 價値에 따라, 그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보는 무수히 많은 상이한 개인들에 의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報酬의 水準은 많은 供給者들과 많은 需要者들간의 複合的 價値와 複合的 關係에 의존하며, 그리고 그 수준은, 그들 모두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참여하는 交換過程의 產物일 뿐이다. 결국 시장에서 한

개인의 보수는 個人的 努力的 函數도 아니며, 또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제공된 苦痛의 函數도 아니다.³⁴⁾

다. 分配的 正義와 福祉

분배적 정의론 논의함에 있어서 「롤즈」(J.Rawls)의 正義의 原理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正義의 原理에 따르면, 개개인은 어떤 未來 社會에서 그들의 특별한 利害關係에 관하여 無知하며 그리고 미래에 혜택을 받게 될 個人的 特性和 能力(이것은 그런 미래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결정한다)에 대하여 無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개인은 道德的 規律을 따르면서 根源的 資產(primary goods: 自由, 機會, 所得, 富 및 自尊)을 최대화하는 규율을 선택할 것이다³⁵⁾. 자신의 이해관계에 무지한 합리적인 개개인이 선택하는 規율이 바로 正義의 原理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第1原理: 각 개인은 가장 광범위한 同等한 基本的 自由에 대하여 同等한 權利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런 自由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類似한 自由와 兩立可能하여야 한다.

第2原理: 社會的 및 經濟的 不平等은 다음과 같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a) 그런 不平等은 最弱者에게 최대의 惠澤을 보장하며 그리고 b) 그런 不平等은 機會의 公평한 同等의 條件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職場과 地位가 개방되도록 허용한다.’³⁶⁾

이런 正義의 原理중에서 第1原理는 第2原理에 우선하며, 또한 第2原理내에서는 b)가 a)에 우선한다. 즉 自由는 自由를 위한 경우에만 제한되므로, 실제로 개인의 기본적 권한인 同等한 自由의 原理는 第2原理로부터 유도되는 經濟的 利得에 우선한다. 그리고 公평한 機會는 差等原理에 우선한다.³⁷⁾

그러면 「롤즈」의 견해를 「하이예크」의 견해와 대비시켜 보자. 첫째 「롤즈」의 正義의 原理는 富者와 貧者간의 不平等을 인정하며, 그리고 이런 不平等 특히 富者の 富가 貧者の 經濟的 地位를 향상시킨다는 주장도 함축한다³⁸⁾ 「하이예크」 역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런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富者の 技術革新과 新製品的의 開發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 富를 증대시키며 또한 소득 또는 부가 公평하게 分配된 社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貧者の 經濟的 地位를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예크」와 「롤즈」는 最弱者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견제하에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인정한다.

둘째 「롤즈」의 이론은 特定한 樣態를 묘사하는 分配的 正義에 관한 理論으로서, 公정한 分配와

34) Butler, E. (1983), *Hayek: His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Our Time*, pp.92~3.

35) Barry, N.P. (1979), *Hayek's Social and Economic Philosophy*, pp.143~4.

36)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p.302.

37) *Ibid.*, pp.302~3.

38) Barry, N.P. (1979), *op. cit.*, p.146.

유사하게 最弱者의 厚生을 극대화하는 樣態를 구상한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特定한 樣態를 理想 또는 바람직한 상태로 상정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로운 시장에서 만족스런 소득을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족스런 생활을 가능케 하도록 추가적인 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런 所得의 移轉이 公正과는 아무런 關係도 갖지 않는다.³⁹⁾

세계 現代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政府가 貧困하고, 불행하며 또한 無能한 사람에게 社會保障給付金を 지급한다. 「하이에크」는, 經濟發展의 結果 富가 증가하고 福祉에 대한 要求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물질적 결핍에 대한 社會保障과 最低生計의 保障 등과 같은 制限的인 社會保障에 대해서는 異意를 제기하지 않지만, 公正한 分配와 같은 目的에 대해선 강한 拒否感을 표시한다.⁴⁰⁾ 즉 最弱者 保護에 대한 問題는 「롤즈」의 주장처럼 論理的인 推論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經驗의 蓄積과 自發的 秩序의 進化過程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이에크」의 公正한 行動의 規律은 알려져 있지 않은 미래의 경우를 포괄하는 抽象的 規律의 體系라고 한다면, 「롤즈」의 正義의 原理는 미래의 사실들에 대하여 無知한 사람들을 위하여 설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에크」의 견해와 「롤즈」의 견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自由社會에 대해서는 그들의 견해가 매우 유사하다⁴¹⁾

VII. 結 論

「하이에크」는 自發的 社會秩序를 옹호하고 있지만, 그 질서가 반드시 그가 증시하는 個人的 自由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자발적 사회질서가 法的 規律內에서 진화하며 그리고 개개인이 그런 규율하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가 증시하는 개인적 자유가 신장되며 또한 사회전체의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사회질서에 적극적으로 간섭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를 출현시키거나 또는 혼돈과 무질서를 유발할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 자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오로지 법규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自由와 소위 分配的 正義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견해는 「롤즈」의 正義의 原理와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그러나 최약자 보호에 관한 문제가 경험의 축적과 자발적 사회질서의 진화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이런 사회보장의 문제가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선 안된다고 보았다.

39) *Ibid.*, p.147.

40) Hayek, F.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pp.257~60.

41) Barry, N.P. (1979), *op. cit.*, p.147.

이런 사회질서에 관한 견해는 궁극적으로 경제에서의 市場秩序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문제는 지면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Summary

A Study on F.A.Hayek's Spontaneous Social Order

Park Sang-soo

The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survey F.A.Hayek's view about social order. My conclusion is as follows :

Hayek supports the spontaneous social order, yet he thinks such order does not always guarantee individual liberty which he sees as desirable. He thinks that, if spontaneous social order evolved within the rule of law and individuals sought their purposes under the rule of law, the individual liberty considered as important and desirable would expand and the social welfare of whole society increase. But if we intervene purposively in the social order to promote individual liberty, it may bring about socialist or totalitarian state or chaos and disorder. There is nothing to do positively for the individual liberty, and we cannot but depend upon the rule of law.

And Hayek's view about the relation between his liberty and what is called distributed justice looks like J.Rawls' the principles of justice, but he thinks that the protection of the least advantaged group is the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by the process of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the evolution of the spontaneous social order and that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should not treated in terms of the social justice.

Ultimately the view about this social order is closely related with the market order in the economy. But I want to delay the survey of this problem because of the space.